제2980호 2023. 2. 17.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14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공람						



제2980호 11-2 2023, 2, 17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4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압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 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6)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9항)
- 기타 오탈자 수정(안 제1조, 안 제19조 제1항, 안 제24조 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별표6)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lsm20821@junggu.seoul.kr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3) 전 화: 02-3396-5983 (팩스: 02-3396-882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제22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벽표 6윽 벽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6 제1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관·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 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 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했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것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마.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 물의 테두리를 말하다)은 포함하다
- 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사.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 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아,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 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자.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023. 2. 17

제2980호 11-6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 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m²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연면적 1m² 초과 2m²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연면적 2m² 초과 3m²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연면적 3m² 초과하는 면적 0.5m²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8만원을	10만원을	13만원을
		더한 금액	더한 금액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²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5만원을	20만원을	25만원을
		더한 금액	더한 금액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법 제20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	일마다 3천원을 다	터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		10 ^r	만원에 31일째부E	1			
하인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1만원을 다	터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 ¹	만원에 91일째부터	1			
		계산하여 1	일마다 2만원을 다	터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번 제20조						
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101123	67만월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3, 12, 10		100 E E					
		l					
		10	0 1-1	1 41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법 제20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5호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법 제20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않은 경우	제2항	0022	00 E E	100 년 년			
10 L 10 I	/114 70						

제2980호 11-8

<u>신 · 구조문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서울특별시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생략) 1. ~ 3. (생략) ② ~⑧ (생략) < <u>신설〉</u>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⑧ (현행과 같음) ②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 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 이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 해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또는 단체 등에게 정게시대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u>지정게시대</u> 2)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	⑤ শ্ৰ
에는 <u>제22조</u> 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	<u>23조</u> 제5항
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신 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제산한다. 다.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제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마.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사.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아.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Y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 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자.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차.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위반행위	근 거	과태료	<u>다. 파네교리 중 마</u> 득에서 1한번 미만다.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 막·백보·천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집보드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안점 1㎡ 미만 - 0.5㎡ 이상 0.5㎡ 이하 - 0.6㎡ 이상 1.6㎡ 미만 - 1.0㎡ 이상 1.6㎡ 이하 - 1.1㎡ 이상 1.5㎡ 이하 - 1.1㎡ 이상 1.5㎡ 이하 - 1.1㎡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1㎡ 이상 3㎡ 미만 다) 연면적 1㎡ 이상 3㎡ 미만 다) 연면적 1㎡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1개 이상 3.6㎡ 미만 라) 연면적 1㎡ 미만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6㎡ 미만 나)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미만 - 1.1㎡ 이상 1.6㎡ 미만 - 1.1㎡ 이상 1.6㎡ 이상 1.6㎡ 이상 1.6㎡ 이상 1.6㎡ 이하 - 1.1㎡ 이상 1.6㎡ 이하 - 1.1㎡ 이상 1.6㎡ 이하 - 1.1㎡ 이상 1.6㎡ 이하	哲念是 學 的 配名 和勢利立	14만원 24만원 34만원 3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약연원의 3㎡ 초과하는 면역의 05㎡ 당 15만원을 더 한 금액 이하 10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14만원	

다) 연면적 2m² 이상 3m² 미만	l		■ 2. 개별기준				
- 2.0m' 이상 2.3m' 이하 - 2.4m' 이상 2.6m' 이하 - 2.7m' 이상 3.0m' 미만		58만원 67만원 79만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연면적 3m ² 이상 나. 철수막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법 제3 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현수막의 조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3.0㎡ 이라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1) 입간판(개당)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나) 면적 1㎡ 초과 3㎡ 이하 다) 면적 3㎡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완선면적 10m 초과하는 면적 의 1m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all 9 - Lall 200 1 7-11-11-1 9-1	적 1m'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0만원을 더한 금액	25만원을 더한 금액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조조제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강당 35천원 강당 45천원 강당 30천위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30장 초파		50천원	60천원	8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한 경우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 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 1만원에 1일째부	-3
1의2. 법제10조 4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2) 기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3 기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3 기가입니다 20 기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지입니다 20 기가입니다 20 기가		계산하여 : 계산하여	: 더한 금액 !터 :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 1일마다 2만원을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번제20A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20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반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제20소 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변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4. 법 제16초에 따른 광고물 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하위로 표 시한 경우 가 면 1회 위반한 경우 나 면 2회 위반한 경우 다. 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 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하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2조제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제2980호 11-11 2023. 2. 17

현 행		개	정	안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태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을림하여	〈삭제〉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 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의 10%에 친구를 작용됐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로 금액의 계산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				
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 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 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